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727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박성훈 · 임이자 · 조은희
김장겸 · 최보운 · 조지연
박수영 · 김은혜 · 김성원
박충권 · 송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 및 교육·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략)</p> <p>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⑧ · ⑨ (생략)</p> | <p>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2029년 12월 31일</u>-----</p> <p>-----</p> <p>-----</p> <p>-----.</p> <p>⑧ · ⑨ (현행과 같음)</p> |